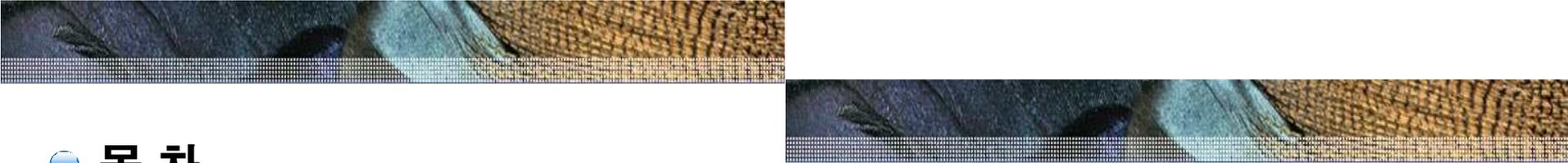




공개SW라이선스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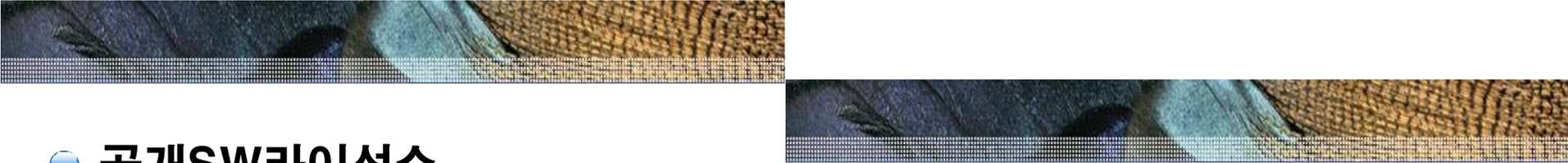




● 목 차

- 공개SW라이선스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이슈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

(본 자료집은 외부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외부자료인용으로 표시합니다)



● 공개SW라이선스

대표적인 공개SW라이선스(외부자료인용)

● GPL (General Public License)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OSS 라이선스.

리눅스, MySQL, GCC 등에 적용되고 있고 가장 널리 적용되는 라이선스.

누구든 해당 GPL 소프트웨어의 파생물을 만들게 되면 해당 파생물 역시 GPL로 라이선스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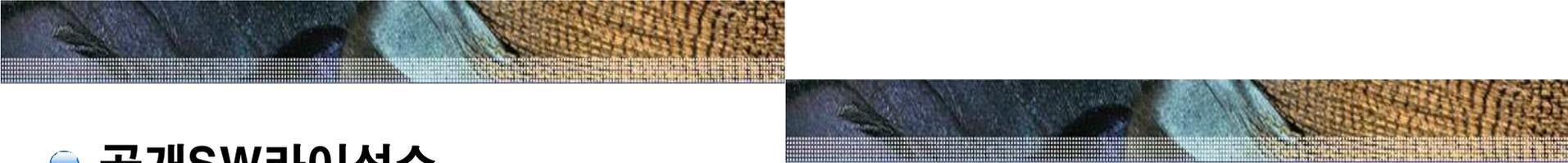
2007년 6월 27일에 발표된 GPL Version 3에서는 라이선스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어 OSS 사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GPL Version 3 신설 조항에서는 GPL 라이선스 침해로 제소 받은 업체는 GPL 적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디지털저작권(DRM) 기술에 대한 규제 강화)

1989년 GPL 1.0 버전 : FSF의 리처드 스톨만(Richard M. Stollman)

1991년 6월 GPL 2 발표

2006년 초 GPL 3 초안 발표

2007년 6월에 GPL 3 정식 버전 발표



● 공개SW라이선스

대표적인 공개SW라이선스(외부자료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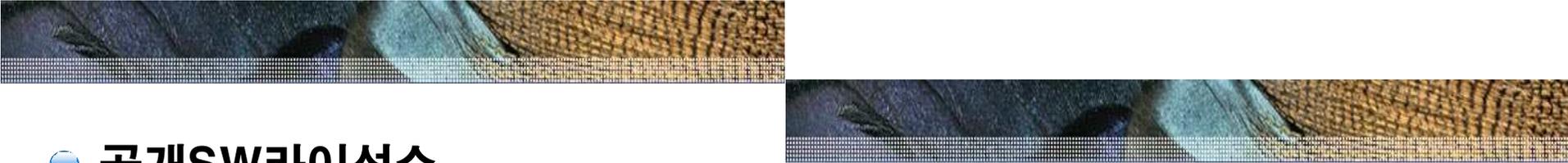
●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OSS의 더욱 활발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GPL의 copyleft 관련 규정을 약화시켜 상용 소프트웨어와 자유롭게 연결되도록 함.

원래는 Library GPL이었으나 라이브러리로 사용하면 무조건 GPL 라이선스에 저촉 받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GPL 보다는 약화된 의무조항을 강조하기 위하여 라이브러리라는 단어를 Lesser로 대체. (일례로 LGPL Version 2.1은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0의 후속 버전)

따라서, GPL의 개작 소스코드 의무 공개 및 재배포 규정을 완화하여 상용기업들 사이에서의 활발한 확산 및 적용을 목적으로 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와 결합을 허용한 라이선스라고 말할 수 있음. OSS가 아닌 모듈과의 링크를 허용한다는 면에서 완전한 Copyleft 라이선스라고 말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및 수정 등을 허용.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를 L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함.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link)시킬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가 없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 시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함. 특허의 경우 GPL과 동일하다.



● 공개SW라이선스

대표적인 공개SW라이선스(외부자료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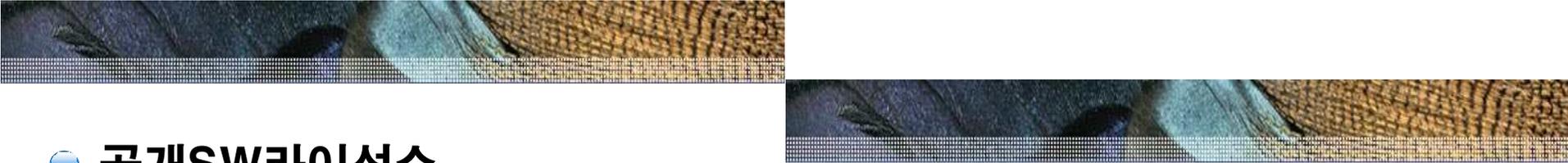
● MPL(Mozilla Public License)

MPL은 넷스케이프가 모질라 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데 사용한 라이선스.
제작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으며, 상업적 이용을 허락.

MPL은 원래 다른 여러 상업적인 성격을 띠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들의 초기 모델.

MPL은 첫 번째 주요한 상용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되었으며, IBM 공용라이선스를 포함한 여러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근간.

MPL은 GPL과 마찬가지로 Copyleft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GPL보다는 매우 구체적. 파생물을 만들 때가 아니라 원래 소스코드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원래 소스코드를 변경할 경우에만 소스코드를 제공하면 됨. 따라서 이러한 조건 때문에 MPL로 라이선스로 된 소프트웨어는 독점(Proprietary)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결합될 수 있음. MPL은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 분리하여 양자를 보완하여 만든 것. 소스코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최초의 저작자에게 수정한 내용을 통지해야 함. 실행 파일은 어떤 라이선스를 사용해도 무방하여 비공개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음, 즉, 독점라이선스로 배포될 수 있음.



● 공개SW라이선스

대표적인 공개SW라이선스(외부자료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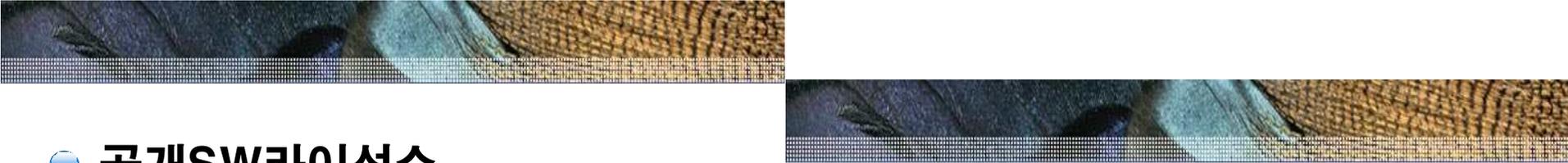
● CPL(Common Public License)

Common Public License는 IBM이 IBM Public License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것. CPL은 좀더 일반적인 이름이라 IBM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회사들도 사용하게 되었는데 EPL과 비슷.

CPL과 EPL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 무효 조항에 있음.

EPL은 만약 사용자가 EPL 소프트웨어에 대해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누구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라도 해당 EPL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CPL은 이에 더해서 CPL 소프트웨어의 개발자가 개발한 임의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해당 CPL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CPL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EPL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에 비해 훨씬 더 큰 주의가 필요.



● 공개SW라이선스

대표적인 공개SW라이선스(외부자료인용)

● BSD License(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소스코드 개작 이후 재공개를 개작자의 판단에 맡기는 라이선스. 이와 같이 BSD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가 넓은 이유는 BSD 라이선스가 미 정부가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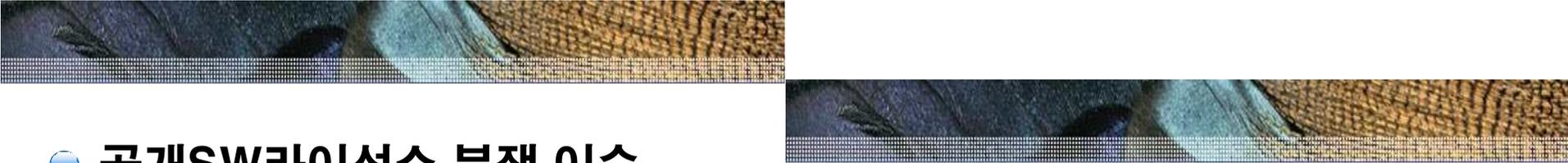
GPL과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BSD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다는 점. 따라서 BSD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음.

● MIT License(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License)

소스코드가 어떻게 사용되든 거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 매우 단순한 라이선스.

한 가지 제약이 있다면 라이선스에 대한 문장이 소프트웨어 어디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단순히 소유권만을 명시하고 다른 조건을 주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라이선스.

한편, Python 라이선스는 Pythonisms는 특별하지만 매우 자유로운 성격. 파생물에 Python 라이선스에 대한 문장만 명기하면 됨.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이슈

지적재산권(외부자료인용)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시, 소설, 노래,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표현(Expression)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 누구도 원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복사, 개작, 재배포할 수 없음.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이 권리가 프로그래머 또는 프로그래머가 고용된 회사에 부여됨.

상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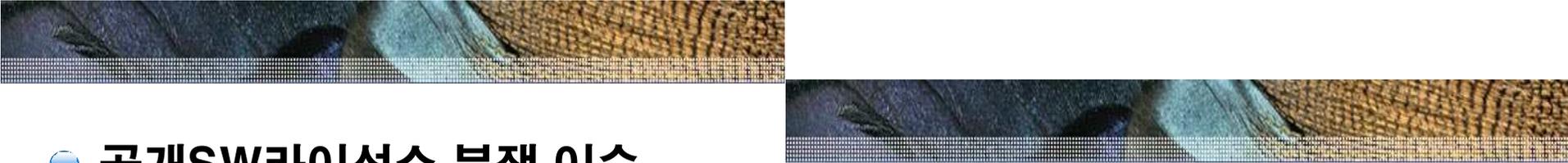
상표권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계되어 마케팅에 활용되는 이름 등을 보호. 또한 상표는 시장에서 나의 제품과 타인의 제품을 구별해 주는 역할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영업상의 정보. 이러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업비밀을 부당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누출하면 처벌 받음.

특허권

특허는 하드웨어에 구현되거나 소프트웨어에 의해 동작이 구현되는 발명(Invention)을 보호. 특허는 무엇인가 유용한 것을 하도록 하는 방식(Method)이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 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거나 소스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 모두에 공통적으로 해당.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이슈

공개SW라이선스 주요 의무(외부자료인용)

1.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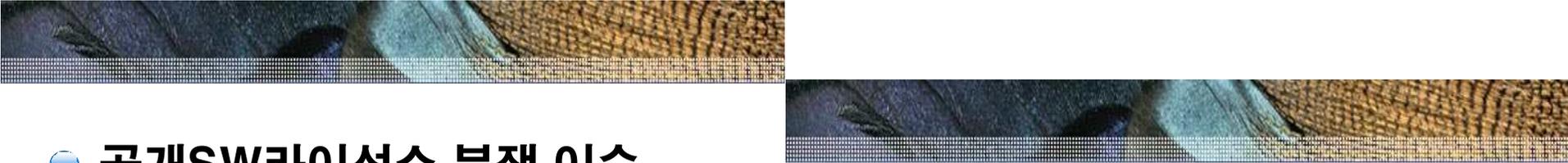
SW의 경우 소스 코드 상단을 보면 프로그램 이름, 개발자이름, 버전, 연락처, 라이선스 명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기 때문에 수정 또는 배포하는 사람이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Apache 라이선스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저작권 표시 문구와 라이선스 정보가 소스 코드에 포함된다
Copyright [yyyy] [name of copyright owner]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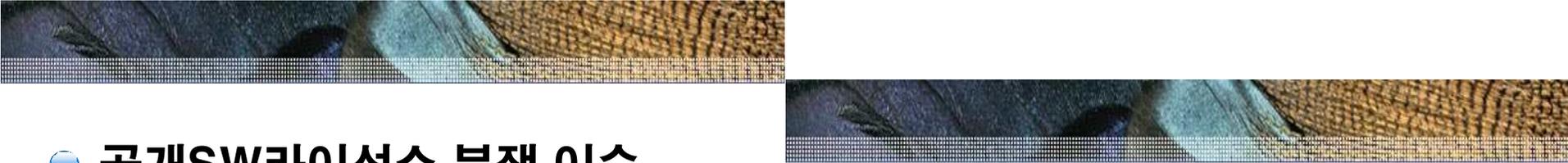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이슈

공개SW라이선스 주요 의무(외부자료인용)

2. 제품명 중복 방지

오픈 소스 SW의 제품명은 상표의 의미이므로 동일 이름의 제품명 및 서비스 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는 조항

리눅스, 아파치(apache), GPL, Eclipse, BSD 등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 또는 서비스 명으로 사용 못함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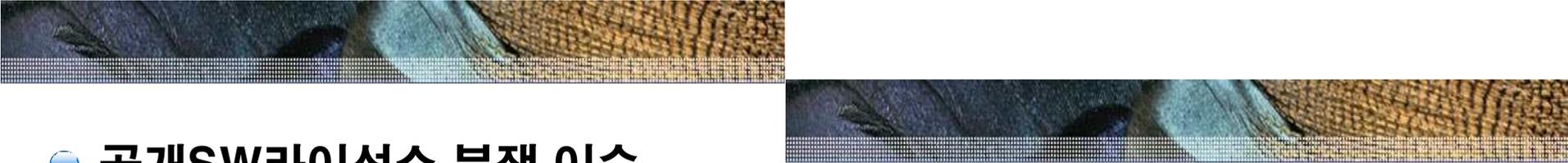
공개SW라이선스 주요 의무(외부자료인용)

3.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 서로 다른 오픈 소스 SW의 라이선스 의무조항이 상충하는 문제에 따라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타 라이선스의 수용 여부를 명시하는 조항
-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배포 불가능

4. 사용 여부 명시

- 오픈 소스 SW를 사용할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함. 문서 작성 시 ‘어느 논문에 무엇을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표기하듯이 SW 또한 사용 여부를 명확히 기술해야 함.
- 물론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꼭 소스 코드에 표기하지 않더라도 매뉴얼이나 별도의 TXT 파일을 만들어 사용한 오픈 소스 SW를 명시하고 향후 함께 배포해야 함.
- 사용 여부를 명시해야 하는 라이선스에는 GPL 2.0, GPL 3.0, LGPL2.1, MPL 등이 해당.
- CPL, OSL, IBM, EPL, QPL, ASL2.0, Artistic, BSD, MIT, AFL, SISSL 등은 사용 여부 명시 의무를 요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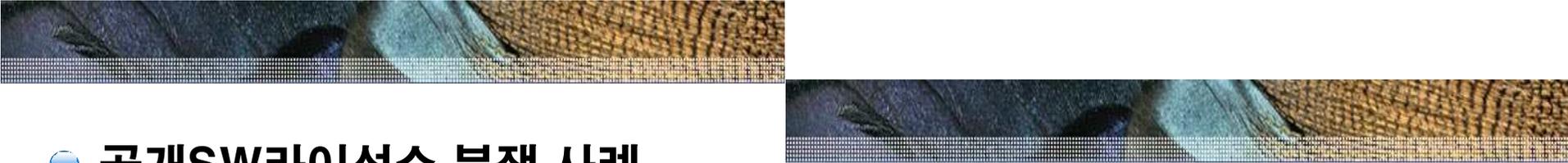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이슈

공개SW라이선스 주요 의무(외부자료인용)

5. 소스 코드 공개

- 경우에 따라 해당 오픈 소스의 소스 코드만 공개하거나(case 1) 해당 오픈 소스의 소스 코드를 수정 또는 추가한 부분만 공개하거나(case 2) 또는 해당 오픈 소스와 링크가 걸린 부분까지(case 3) 모두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음.
- 소스코드를 CD-ROM 등의 매체에 담아서 제품 배포 시 함께 제공하거나, 매뉴얼에 소스코드를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입하여 두거나, 혹은 FTP 서버, 웹 서버 등에 소스코드를 업로드해 두고 매뉴얼에 해당 주소를 기입해야 함.
-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ile 형태로 배포하는 경우,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받고 소스코드를 제공할겠다는 문서 (Written Offer)를 함께 제공해야 함.
- GPL 2.0, GPL 3.0, LGPL2.1, MPL, CPL, OSL, IBM, EPL, QPL 등이 해당됨.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

공개SW라이선스 분쟁 현황(외부자료인용)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

국내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외부자료인용)

보안 및
인터넷
통신업체
X & Y

- X의 핵심 솔루션인 ETUN의 개발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HnP라는 회사를 창업하면서 ETUN을 개량한 HL 소프트웨어를 하이온넷에 제공
- X가 Y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소송, 저작권침해 가처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
- 소송의 핵심 대상인 ETUN이 GPL 라이선스인 Vtun을 모방한 것이 밝혀짐
- FSF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엘림넷과 하이온넷 모두 GPL을 위반했고 따라서, 영업비밀은 해당되지 않음을 제안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FSF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ETUN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정하였고 항소 진행 중(2005.9)
- 이후 FSF는 엘림넷과 하이온넷을 상대로 GPL 라이선스인 Vtun의 저작권위반과 관련하여 저작권자들을 대표하여 이의 제기
- 엘림넷과 하이온넷은 향후 GPL 준수를 약속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 전체를 공개
- **쟁점 및 시사점 :**
 - 국내 최초의 GPL 라이선스 관련 소송 사건
 - 경쟁사간의 법정 소송
 - 법원 결과와 관련 없이 양사 모두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사건의 핵심 솔루션에 대한 소스가 GPL 임을 인정하고, Y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였고 GPL 규정에 따라 공개
 - 홈페이지를 통해 소스 전체를 공개 하였음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

국내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외부자료인용)

게임업체
X

- 국내 게임기 개발 업체인 X는 오픈 소스 SW 소스 코드를 활용해 개발한 휴대용 게임기를 유럽 시장에 출시
- X는 오픈 소스 SW 개발자 측으로부터 GPL을 준수하고 향후 GPL 미 준수 시 벌금을 내라는 각서를 요구 받음
- 당초 GPL에 따라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서 일부 추가 개발 부분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항의를 받은 뒤 이를 모두 공개했지만, 주석(사용한 모든 오픈 소스 SW 소스 코드의 이력을 명시한 것) 등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개선을 요구 받았으며, 해당 게임기에 특정 소스 코드 적용 여부를 파악하는 데 투입된 조사비 명목의 비용 청구도 받음
- 문제를 제기한 개발자 측이 앞으로 GPL의 추가 위반(오픈 소스 SW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경우 건당 벌금을 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 **쟁점 및 시사점 :**
 - 원 저작자를 통한 이의제기
 - 오픈 소스 SW를 활용하면서도 관련 라이선스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저작권 위반에 따른 위험이 존재함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

해외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외부자료인용)

Skype

- 독일지방법원이 세계 최대 인터넷전화 업체인 스카이프가 오픈소스 라이선스인 GPL을 위반했다고 판결(2007.7.29)
- 스카이프 독일 지사가 유통한 인터넷 전화용 송수화기 'SMCWSKP100'에는 SMC라는 스페인 제조업체에서 펌웨어를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었음.
- 법원은 "송수화기의 제조업체는 SMC지만, 스카이프가 이 제품을 실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으므로 라이선스 요건 충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 법원이 GPL 위반을 결정 내린 배경은 GPL 기반 제품은 유통할 때, 사용자들이 소스 코드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해당 제품이 GPL 기반 제품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카이프는 모두 지키지 않았음
- 스카이프는 이번 결정으로 SMCWSKP100의 소스 코드를 개방하고 벌금도 지불해야 함
- 금번 소송은 GPL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조직인 'gpl-violations.org' 산하 독일지부에서 제기됐고 이 조직은 2005년에도 보안업체 포리네트(Forinet)가 GPL을 어겼다고 소송을 제기, 소스 코드를 공개토록 유도한 바 있음
- 쟁점 및 시사점 :
 - 이번 사례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에도 GPL 위반 책임을 물었다는 점
 -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GPL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는 점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

해외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외부자료인용)

High-gain Antenn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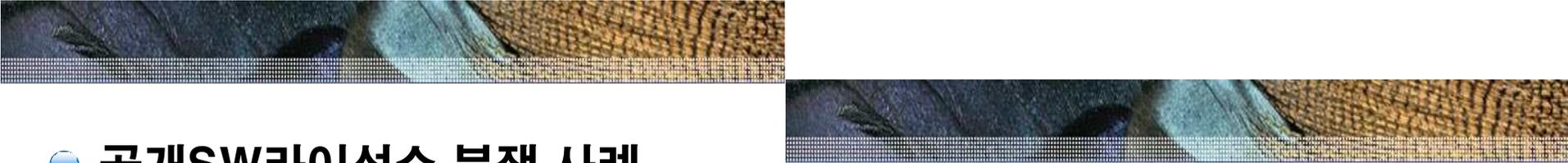
- 미국 뉴욕 주 법원 "Erik Andersen 과 Rob Landley 대 High-Gain Antennas, LLC" 간의 GPL 위반 소송 합의 (2007.11.19)
- BusyBox의 두개발자에게 법적 대리를 위임받은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와 High-Gain Antennas간의 GPL 2.0위반 책임에 대한 법정 합의 사례
- BusyBox는 표준 유닉스 유틸리티들을 임베디드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한 것으로, Erik Andersen과 Rob Landley가 개발하여 GPL로 배포하였음
- Erik Andersen과 Rob Landley는 SFLC의 도움을 받아 GPL 조건을 위반하여 BusyBox를 무선 연결장비에 사용하고 있던 Monsoon Multimedia, Xterasys Corporation, High-Gain Antennas, LLC., Verizon Communications Inc.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 이들 위반업체 모두는 각 기업 내부에 GPL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명할 것과, BusyBox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고객들에게도 GPL과 관련된 고객들의 권리를 알려줄 것과, (비공개의)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
- 쟁점 및 시사점 :
 - GPL준수를 위한 관리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판결
 -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하고 있는 기업들과 원 저작권자 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

해외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외부자료인용)

Fotinet

- 보안 장비 개발업체인 포티넷은 뮌헨의 한 지방 법원으로부터 하랄드 벨테가 신청한 사전 금지 명령을 받음 (2005)
- 이로써 포티넷은 리눅스 컴포넌트인 'initrd'를 포함하고 있는 자사 제품을 유통할 수 없게 되었고 initrd는 GPL 라이선스며 하랄드 벨테에게 저작권이 있음
- 포티넷의 경우는 GPL 침해 방지 프로젝트 측에서 지난 2005년 3월 17일 GPL 위반 사실을 통보했지만 "시정 조치와 관련된 법원 밖 협상이 실패했다"라고 밝힘
- 벨테는 지난 3월 세빛 박람회 참여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편지를 보냈으며, 1년 전에는 포티넷과 비슷한 사례인 사이트콤과의 소송에서도 승리
- GPL 침해 방지 프로젝트는 포티넷이 포티게이트와 포티와이파이 제품군에 포함된 OS에서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포티OS에는 리눅스 OS 커널과 GNU GPL로 라이선스 된 수많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포티넷이 이런 정보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
- 벨테는 의심 가는 제품의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GPL 소프트웨어가 제품에 사용됐는지를 밝혀내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포티넷의 경우는 제품에서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부분을 암호화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경우였고, GPL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데 40 시간이나 걸렸다고 주장
- 벨테는 포티넷이 항소하지 않고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다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마무리될 것이고, 포티넷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포티넷이 항소를 선택하거나 법원 명령을 무시한다면 이 소송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
- initrd는 리눅스 컴퓨터 부팅 프로세스에 필수적인 모듈이며, 벨테는 리눅스에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는 넷필터/아이피테이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기도 함
- 법원은 포티넷이 5~25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원들은 금지 명령 위반으로 6개월 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포티넷은 또한 벨테의 법률 소송 비용도 지불해야 함
- **쟁점 및 시사점 :**
 - 저작권자의 규정 준수에 대한 시정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법원판결을 받은 사례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

해외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외부자료인용)

D-Link

-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이 대만의 D-Link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NAS 장비인 DSM-G600이 GPL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판결 (2006.6)
- 본 소송은 GPL-Violations에서 제기했고 본 판결을 통해 D-Link는 DSM-G600 판매를 중지하고 벌금은 물론 GPL-Violations에게 소송비용 일체와 테스트 장비 구입과 Reverse Engineering 비용을 부담해야 했음
- 쟁점 및 시사점 : 독일법 아래에서 **GPL**의 법률적 구속력을 인정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

해외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외부자료인용)

Haxil

- 가전기기 생산업체인 Haxil 사는 동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작은 GNU/Linux 배포판을 제품 내에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장치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관련 소스 없이 Free Software가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
- Free Software 공동체의 Mailing lists에는 이와 관련한 불만사항들이 넘쳐났고, FSF는 즉시 조사에 착수
- FSF는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GPL 라이선스인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전체 배포판은 GPL 라이선스가 인정되는 수많은 개인 저작권자들의 저작물까지도 포함하고 있었음을 확인
- 그사이 Haxil 사는 Polgara 사의 인수과정에 있었고 Polgara 사는 그때까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이 GPL 라이선스가 있는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고 이러한 사실은 인수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었음
- Polgara 사는 자신들이 이용한 소프트웨어 배포판은 대부분 상위 제공자인 Thesulac 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며, Haxil 사가 코드베이스를 변화시킨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힘
- FSF는 FSF와 Polgara사, Thesulac 사 사이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 Thesulac 사는 거의 완전한 형태의 소스를 Polgara 사에게 제공했고, Polgara 사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완전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공개했음.
- **쟁점 및 시사점 :**
 - 소비자들에 의해 쟁점화 되어 FSF가 저작권의 대표성을 가지고 교섭
 - **소프트웨어기업에 있어 GPL규정은 회사 인수시의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함**
 - 생산자의 규정준수 문제는 배포자의 위반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음 (협력사 관리의 필요성)
 - FSF의 교섭을 통해 더 많은 당사자들이 관련되는 불필요한 사건의 발생을 피할 수 있음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

해외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외부자료인용)

Vigori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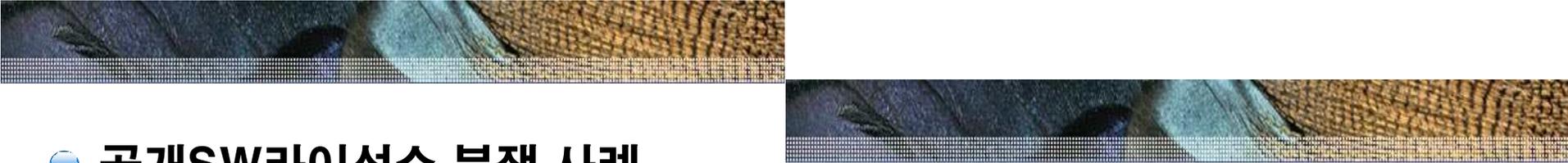
- 백업솔루션 상품을 배포하는 Vigorien사는 백업 유틸리티인 GNU tar에 기초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Vigorien 사의 암호화된 특징들을 GNU tar에 추가했으며, 백업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유틸리티와 그래픽 칼 유저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었음
- FSF는 이용자 리포트를 통해 위반내용을 인지하고 추가된 암호화된 특징들은 단순히 GNU tar의 2차적 상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결정
- FSF는 Vigorien 사에게 암호화된 수정내용과 함께 GNU tar의 소스를 그 소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GPL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Vigorien 사는 GNU tar의 원 소스는 공개했지만, 암호화된 수정내용은 자신들의 재산권으로서 유보
- Vigorien 사는 자신들의 시스템 보안의 문제는 소프트웨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또한 USA 수출제한 규정에서 암호화된 소프트웨어가 공개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주장
- FSF는 그들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Vigorien 사가 소스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GNU tar를 소프트웨어상에서 제거하고 이후에도 더 이상 그것을 배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밝힘
- Vigorien 사는 GNU tar가 제품에 일체로 결합된 부분이어서 GNU tar가 없이는 보안성과 관련한 수정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제안을 거절
- 두 번째, 수출규제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FSF는 그러한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Vigorien 사의 해외 지사에서 공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
- Vigorien 사는 자신들이 주로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암호화와 관련한 수출규제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제되면서 해결되었고FSF는 재차 Vigorien 사측에 문제를 제기함
- Vigorien 사는 자신들의 첫 번째 주장을 철회하고, 나머지 소스 모듈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기로 동의하여 소스 모듈을 공개함
- 쟁점 및 시사점 :
 - GPL 라이선스가 인정되는 부분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GPL의 2차적 생산물이라는 증거이며, GPL 규정을 준수해야 함
 - 항상 제품의 전체가 GPL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님, GNU-tar에 기초한 생산품의 배포판에 결합된 다양한 GUI 유틸리티들은 독립된 개별 상품
 - 보안성의 문제는 배포자에게 GPL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

해외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외부자료인용)

Bracken

- Bracken사는 GNU/Linux 운영시스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OEM 벤더들에게 판매되며, 응용장치에 설치되어 인터넷 브라우징 역할을 하는 장치와 같이 단일한 용도로 사용되며, 동 제품은 거의 100% Free Software이며, 대부분 GPL이나 관련된 Free Software 라이선스에 따라 생산된 것임
- FSF는 개발자 뉴스 및 토론사이트인 Slashdot.org에 게재된 리포트를 통해 Bracken사의 제품이 온라인 배포과정에 위반내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다른 Free Software 저작권자들로부터도 동일한 통지를 받음
- 배포된 GNU/Linux 시스템의 많은 구성요소에 대한 소스코드나 소스코드를 요청하는 과정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으며, 단순히 binary만이 이용가능 하도록 되어 있었음
- **End User License Agreement("EULA")**는 GPL에 의해 승인된 허용범위와는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 FSF는 Bracken사와 접촉해서 자세한 위반내용을 전달했고, Bracken사는 즉시 제품의 배포를 일시적으로 중지했으며,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으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고 동 계획은 이하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 Bracken사의 대리인은 EULA를 GPL에 맞게 재 작성할 것이며, 새로운 EULA의 이용 전에 FSF를 통한 심사를 거친다.
 - Bracken사의 엔지니어들은 GNU/Linux 배포판에 관한 소스를 binary 형태로 제공한다.
 - Bracken사의 대리인은 소스공개와 관련한 이러한 사태가 장래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GPL의 준수를 위한 내부세미나를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Bracken사는 FSF가 공식적으로 당사의 배포권을 회복시킨 이후에만 상품의 배포를 재개한다.
- FSF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Bracken사의 배포권을 회복
- **쟁점 및 시사점 :**
 - **GPL 위반사항이 가장 빠르게 해결된 사례, 오픈 소스에 대한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는 조직은 GPL규정의 준수와 개선과정도 용이함**
 - 법률적으로 위반내용이 확인된 순간 이후부터 배포가 중지 되어야 함, 만약 **Bracken사**가 권리 회복이전에 배포를 실행하고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됨
 - **EULA**는 반드시 기존에 **GPL**에 의해 승인된 권리나 허용기준에 우월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야 함



●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

해외 공개SW라이선스 분쟁 사례(외부자료인용)

Cisco &
IBM

- Cisco Systems was involved in a GPL violation in October 2003, when its newly acquired Linksys division shipped equipment developed by an offshore subcontractor that had made inappropriate use of Linux. Upon discovery of similar violations in the code of acquisition target Think Dynamics, IBM was able to negotiate a 50% reduction in the purchase price.

(Ingrid Marson, "Defender of the Linux Faith," CNET News, http://news.com.com/2102-7344_3-5625667.html, accessed March 17, 2006.

"Cisco Buys into Automated Software License Analysis," LinuxDevices.com, www.linuxdevices.com/news/NS8707919407.html, accessed March 17, 2006.

On the acquisition, see Mark Evans, "IBM Pays US\$50M for Upstart Think Dynamics: Less than \$1M in Revenue," *National Post* (Toronto), May 15, 2003, p. FP 3. Available from Factiva, www.factiva.com, accessed March 22, 2006.

시스코는 2003년 10월 GPL 위반 분쟁에 휘말렸다. 시스코에서 새로이 인수한 링크시스 사업부가 출시한 장비에 탑재된 외국 외주용역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리눅스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IBM은 씹크 다이내믹스를 인수할때 GPL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인수가액을 50%까지 낮추기도 했다)